

[별표 1]

## 산불조심 경고판

(제5조제3항 관련)

	120 cm		
	<b>산 불 방 지 경 고 판</b>		
	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 지역은 화기, 인화,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입니다.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으로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.		
90 cm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담배, 라이타, 성냥 등을 소지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/li><li>○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.</li><li>○ 고의로 산림에 불을 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.</li></ul>		
	20   년   월   일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○ 시 · 도 지 사</li><li>○ ○ 지 방 산 립 청 장</li><li>○ ○ 시 장 · 군 수 · 구 청 장</li><li>○ ○ 국 유 립 관 리 소 장</li></ul>		

### ■ 제작 및 설치요령

1. 이 경고판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 주요 입구에 설치
2. 경고판의 모양 · 색상 등은 산불CI 지침에 의한다.
3. 설치 부서에서는 크기와 모양 그리고 핵심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 가능